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1나20017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선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6. 24.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3674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3,21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명의대여자 책임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보관금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 도매 및 종합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작업복, 군용피복 등의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F은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피고의 배우자인 G도 피고와 함께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F은 조달청 구매사업국이 발주한 ‘H 구매 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6. 3. 21. 조달청과 K 등 의류를 653,215,36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1. F에 653,215,3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과 원고는 2016. 3. 23. F이 이 사건 물품계약에 기한 653,215,36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F과 원고는 2016. 3. 23. 조달청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조달청은 한국철도공사의 각 지점에서 직접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F은 한국철도공사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이후 2016. 6. 16.부터 2016. 7. 20.까지 대전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계약에 기한 대금 653,215,36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6. 10. 10.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0181호로 위 물품대금 653,215,36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8.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는, 피고가 오래 전부터 F의 대표자로서 F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F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전혀 다투지 않고

있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F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배우자 G와 함께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653,215,360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653,215,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F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면, 피고는 G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F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거나, 적어도 원고는 G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G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위 물품대금 상당액에 대한 보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G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공동 운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물품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653,215,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김길량, 판사 김용민